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의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3년 12월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2015년 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관련
업무도 간담)

앞으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환불받으세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 1522-0082

무인회수기 설치 대형마트 점포 안내

지역	지점	구분	설치대수
서울	롯데마트	구분점	2
		도농점	1
	롯데수퍼	공익점	1
		심수점	3
		제형점	2
수원	롯데마트	원교점	1
		고려점	3
인천	롯데마트	부원점	2
		상산점	1
	신세계백화점	민간점	3
		기차점	1
남양주	이마트	도농점	2
		합계	13개 지점

빈용기보증금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1차 2016.01.21~

유통지원센터에서
보증금·수수료 지급관리를
담당합니다.

2차 2016.07.01~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 시
최대 5만원까지 보상해드립니다.
#신고전화 1522-0082

3차 2017.01.01~

빈병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소주 100원(←40원)
맥주 130원(←50원)

빈용기보증금 신고 보상제도

소매점은 빈병을 꼭 받아주세요!
소비자는 빈병을 꼭 반환하세요!



비용기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비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알아두세요!

2016년 7월 1일부터는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보상금을 노린 건물 파마라치를 막기 위해 신고 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제한

사전공포, 허위, 중거 조작 등 부정 신고의 경우 보상금 미지급

어디로 신고해?

비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www.kora.or.kr

소매점은 빈병을 꼭 받아주세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하거나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야 함)

빈병을 도매상 등에 반환할 경우 제조사 및 제품별로 구분해야 하며, 파손 및 분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의 보증금이 변경되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보증금을 확인하고 판매·환불해야 합니다.

주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 가격이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음식점에서 마시고 남은 빈병은 해당 사업자의 소유로 가져가시면 안되고, 일반 소매점에 반환하거나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빈병을 꼭 반환하세요!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 여부나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 가능합니다.

빈병이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환불 불가)

빈병 관리는 이렇게!

